K리그 윤리강령



한국프로축구연맹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
제2조. 적용 대상 ····· 3

제2장 건전한 K리그 문화 조성

제3조. 규정과 법령 준수 ····· 3
제4조. 구성원 간 상호 존중 ····· 3
제5조. 상호간 공정경쟁 ····· 3
제6조. 팬에 대한 자세 ····· 4

제3장 공정한 직무 수행

제7조. 정치적 언동 금지 ····· 4
제8조. 이해충돌방지 및 직무 관련 정보 및 기회 유용 금지 ····· 4
제9조.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구성원 간 금전거래 금지 ····· 4
제10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 4
제11조. 진실추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 4

제4장 부정행위 금지

제12조. 가족 채용의 제한 ····· 5
제13조. 알선, 청탁, 공용물 및 공적 자금의 사적 사용 등 금지 ····· 5
제14조. 괴롭힘, 차별 금지 ····· 5

제5장 위반시 조치

제15조. 구단의 소속 구성원에 대한 조치 의무 ····· 6
제16조. 연맹 상벌위원회의 징계 ····· 6

K리그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강령은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직분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K리그 내 청렴 문화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강령은 K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록선수, 지도자, 구단 및 구단의 임직원, 연맹 및 연맹의 임직원을 비롯한 K리그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건전한 K리그 문화 조성

제3조 규정과 법령 준수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K리그의 정관, 규정, 경기 규칙 등 제반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FIFA, 협회, 연맹, 각 구단의 원칙과 목표를 지지한다.

제4조 구성원 간 상호 존중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개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한다.

제5조 상호간 공정경쟁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 이익이 대립되는 사안에 있어서 '페어플레이'를 핵심 가치로 놓고 서로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면서 경쟁해야 하고, 규정을 우회하거나 편법, 사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팬에 대한 자세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팬이 K리그의 존립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항상 팬을 존중하고 팬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팬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3장 공정한 직무 수행

제7조 정치적 언동 금지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K리그 내에서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언동을 하여서는 안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 이해충돌방지 및 직무 관련 정보 및 기회 유용 금지

①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직위를 남용해서는 아니되고, 사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구성원 간 금전거래 금지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경기 및 리그 운영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금전 거래, 보증 등을 허용되지 아니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업무 또는 K리그 관련 기밀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자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서로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당사자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진실추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① K리그 모든 구성원은 상호간 또는 제3자와 활동을 함에 있어 서로를 진실되게 대함으로써 K리그의 진실성 및 신뢰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본 강령 또는 K리그 정관 및 규정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이를 적발한 자는 즉시 이를 연맹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부정행위 금지

제12조 가족 채용의 제한

① 구단은 현직 임원 또는 직원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연맹은 이해충돌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의 가족이 본 조 제정 당시 이미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 알선, 청탁, 공용물 및 공적 자금의 사적 사용 등 금지

①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K리그의 공용물, 자금 및 자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괴롭힘, 차별 금지

①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사회,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이나 기타 의견,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성적 지향, 기타 원인을 이유로 경멸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되며, 타인을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②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시 조치

제15조 구단의 소속 구성원에 대한 조치 의무

모든 구단은 소속 구성원 등이 본 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맹에 신고하고 관련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연맹 상벌위원회의 징계)

본 강령을 위반하는 자는 연맹 상벌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내역

2021/10/08 제정
2024/01/15 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www.kleague.com